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외국인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·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2항제1호	30	50	70
나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,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호	50	75	100
다.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2호	50	75	100
라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경우	법 제31조 제2항제2호	70	70	70
마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,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	법 제31조 제2항제3호			
1) 보고,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	30	50	70
2)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		70	70	70

하거나 보고한 경우 바.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1조제 1항제3호	50	75	100
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